

# 特許法(法令 第92號)

(改正 檀紀 4285年 4月 13日)  
法律 第238號)

이 資料는 古本과 舊官報에서 複製하여 原型대로 掲載하므로 페이지의 順序가 거꾸로 되었음을  
밝히면서 錯誤 없기 바란다.

登録特許는 境遇과 前項斗效力斗有旨

第百條의 规定에 依한 頒布特許는 既往斗獨占的實

施權者、據保權者及地域의 権利者에 三對抗斗存

音

第百五條規定은 實施權의 移轉、變更、消滅或處

分割制限王는 實施權目的으로 擁保權斗設定、

變更、消滅或處分의 制限에 此是適用함

第百六條 特許權者는 指印或承認書特許權을 授與

書를 提出하여 特許權을 移轉斗境遇斗權利者

特許權者는 擁保權者或獨占權에 移轉斗境遇斗權利者

關係者、第三十二條第二項、第百三條、第百十條

規定에 依한 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登録特許는 擁保權者、獨占的 實施權者及

地域의 権利者의 承諾書이 特許權을 移轉할 수不得

三、特許發明斗明細書는 諸而其實施에 必要할

事項을 故意로 記載하지 않고는 其實施은 不能或

之因無計才斗가爲 하면 不必要或之虛偽斗事項을

故當是記載할 때

四、特許外國際條約王는 協定에 違反하斗特許與是時

五、特許外第三十八條王는 第三十九條의 规定에 違

反斗가見할 때

三、特許發明斗明細書는 諸而其實施에 必要할

事項을 故意로 記載하지 않고는 其實施은 不能或

之因無計才斗가爲 하면 不必要或之虛偽斗事項을

故當是記載할 때

四、特許外國際條約王는 協定에 違反하斗特許與是時

五、特許外第三十八條王는 第三十九條의 规定에 違

反斗가見할 때

三、特許發明斗明細書는 諸而其實施에 必要할

事項을 故意로 記載하지 않고는 其實施은 不能或

之因無計才斗가爲 하면 不必要或之虛偽斗事項을

故當是記載할 때

三、特許發明斗明細書는 諸而其實施에 必要할

事項을 故意로 記載하지 않고는 其實施은 不能或

之因無計才斗가爲 하면 不必要或之虛偽斗事項을

故當是記載할 때

三、特許發明斗明細書는 諸而其實施에 必要할

事項을 故意로 記載하지 않고는 其實施은 不能或

之因無計才斗가爲 하면 不必要或之虛偽斗事項을

故當是記載할 때

三、特許發明斗明細書는 諸而其實施에 必要할

事項을 故意로 記載하지 않고는 其實施은 不能或

之因無計才斗가爲 하면 不必要或之虛偽斗事項을

故當是記載할 때

三、特許發明斗明細書는 諸而其實施에 必要할

事項을 故意로 記載하지 않고는 其實施은 不能或

之因無計才斗가爲 하면 不必要或之虛偽斗事項을

故當是記載할 때

告에 참가할 수 있음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는手續은同法院所定의 规定에  
의함

**第一百七條** 特許權의 制限을 註하여 또 그附註를 하여 此

是擔保主供述으로 移轉할 수 있음

特許權者는 國內特定地域에 限하여  
特許權이 属한獨占權을他人에게 設定할 수 있음

其地域의 權利는 制限을 附하여 그附註를 하여 此

는當該権利者는 許諾를 하여  
은며 特許權者는 출판자와 特定地域의 許諾를 하여  
는當該権利者는 許諾를 하여

特許權이 共有되거나 遺여되거나 각共有者는 共有의 同  
意外無하면 特許權은 擔保主는 移轉할 수 있다. 或는 特許  
權이 分別하여地域의 權利는 設定할 수不得

特許權은 特許權이 属한地域의 權利로 移  
轉, 特許權이 属한地域의 權利는 設定,地域의 權利  
는 消滅及拋棄에 因하여 特許權이 消滅, 特許權은 지역  
의 權利는 處分의 制限, 特許權은 其이 属한地域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八條 特許權과 共有되거나 遺여되거나 각共有者는 共有의 同  
意外無하면 特許權은 擔保主는 移轉할 수 있다. 或는 特許  
권이 分別하여地域의 權利는 設定할 수不得

特許權은 特許權이 属한地域의 權利로 移  
轉, 特許權이 属한地域의 權利는 設定,地域의 權利  
는 消滅及拋棄에 因하여 特許權이 消滅, 特許權은 지역  
의 權利는 處分의 制限, 特許權은 其이 属한地域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別段의 特約로 有する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別段의 特約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別段의 特約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別段의 特約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別段의 特約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別段의 特約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別段의 特約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别段의 特약으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别段의 特약으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别段의 特약으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第一百九條 特許權과 각共有者는 别段의 特약으로 有하는  
의 權利에 関한 捉保主의 設定, 移轉, 變更消滅或  
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하지 않거나 第三者에 関한 抗告  
는 不得

### 第一百十條 特許權者는 地域의 權利者는 證明하고 考

案의 實施을 他人에게 許諾할 수 있고 그地域의 權利者는  
는 自己의 權利에 関한地域에 關하여 實施을 許諾

하는 許諾를 하여 他人에게 許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無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許諾

하는 許諾를 하여 他人에게 許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許諾

하는 許諾를 하여 他人에게 訸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訸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는 地域의 權利者는 其後獨占的實施權을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하는 計諾를 하여 他人에게 計諾를 하여

二、 一定 금액의 製造使用費로 計算된 각各物品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에 對하여支拂是經過或未補償金의 計算된 각각의 費

의 實施範圍, 特許品의 製造賣出, 特許兒技術等  
는 方法의 生產或生產用數量, 計算된 製造使用費

## 續・古資料시리즈(6)

分단과 인정하는期間 諸願을保留한다는命令을  
발할 수 있음

三、局長은濫用防止에關한 授權을遵守하는特許

權者地域의權利者 또는濫占的實施權者와約束을

承認할 수 있음 但利害關係人과諸願或之職權으

로其請願手續을博開할 수 있으며約束의條件이述

守되자惟其他措置를取할 수 있음

四、局長은諸願者或이發明王이考案의 實施能力을

有する지 評制實施權을許與하되 또는特許權者

地域의權利者에依하여許與毛現存實施權을變更

할 수 있음

五、局長은工特許에關한獨占權을必要로 하는生產

에對하니資本이있어實施不能한理由로國內에서

適當한商業의規模로其發明王이考案의 實施되지

못한가로認定하니遭遇는特許權者 또는其에依한

诸願者가其資本을調達하려고하거니와는限其資

本을調達할能力이없는外有諸願者其他에對하

의單獨으로其獨占의 實施權을許與할 수 있음

六、地域의權利者 또는濫占的實施權者가其獨占權

을濫用하여如何한方法으로든其濫用을避免하기

不能하였다는局長은特許權者에依하여許與毛

濫占的實施權을地域의權利者를取消하려고工는濫占

的實施權을非濫占的實施權으로變更할 수 있음

但何時는지局長은其地域의權利者의權利喪失을

迴避하여實施權이工指定地域內에서 he에賦與한

境遇에는其地域의權利者로此에對하適當한特許  
權使用料과請求權을有함

七、其他方法으로其濫用을避避할 수 있나工認定할 때

는局長은其特許를取消할 수 있음

第百四條 局長이第百·三條第三項의第四항·第五항

及第六號斗規定에依하여強制實施權을許與하거나

工는現存實施權의條件를變更함에局長은工實施

權이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決定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條件을附하여其實施權을許與할 수 있음

實施權의條件를決定할 때는局長은可能한限左記事

項을參照하여야함

一、局長은工特許權者·地域의權利者·權利害斗矛盾

이상의 두斗國內에서發明及考案의 實施是最大限

度로確保하여國內에서特許物品에對한需要를滿

足시키고工努力하여야함

二、局長은發明王이考案의 國內에서 實施權利者에

相當히有用하게發明되었고 있고工特許品에對한需要

要가充足되었고其事實에矛盾하지 않도록最大程度

度의利益을其特許權者及地域의權利者에게確保

力求努力하여야함

이상의 正當理由가表示되며特許權 사용料其他

의許與實施權의因은對價를減額할 수 있음 但利

害斗不平等決定하는 데있어서는局長은發明或은

考案의商業의徵候를檢討하여其發明考案의商業

의運營을確保하기위하여前實施權의 實施狀況과

資本의支出及消費의物品을參照하여야함

二號에規定한條件에依하여諸願을保留할 수 있음

前項規定은強制實施權王는承認或之變更로受한實

施機會를喪失後實施權者가規定한方法으로發明考案

의實施하기위한其의對한充分한理由에無할 때

는其實施權을取消함 但局長은第百·三條第三項第

二號에規定한條件에依하여諸願을保留할 수 있음

前項規定은強制實施權王는承認或之變更로受한實

施機會를喪失後實施權者가規定한 method으로發明考案

의實施하기위한其의對한充分한理由에無할 때

는其實施權을取消함 但局長은第百·三條第三項第

二號에規定한條件에依하여諸願을保留할 수 있음

前項規定은強制實施權王는承認或之變更로受한實

施機會를喪失後實施權者가規定한 method으로發明考案

의實施하기위한其의對한充分한理由에無할 때

는其實施權을取消함 但局長은第百·三條第三項第

許權者王는地帶的權利者가此를拒否하거나或은右

要求後二月以内에手續을取하지 않을 때는實施權者

는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를 报告로 하여自己名

號로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決定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는出頭하여手續에參加하

되며其은其使用料에對하여서는責任을負擔처음

要求後二月以内에手續을取하지 않을 때는實施權者

는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를 报告로 하여自己名

號로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decision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는出頭하여手續에參加하

되며其은其使用料에對하여서는責任을負擔처음

要求後二月以内에手續을取하지 않을 때는實施權者

는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를 报告로 하여自己名

號로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decision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는出頭하여手續에參加하

되며其은其使用料에對하여서는責任을負擔처음

要求後二月以内에手續을取하지 않을 때는實施權者

는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를 报告로 하여自己名

號로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decision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는出頭하여手續에參加하

되며其은其使用料에對하여서는責任을負擔처음

要求後二月以内에手續을取하지 않을 때는實施權者

는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를 报告로 하여自己名

號로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decision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는出頭하여手續에參加하

되며其은其使用料에對하여서는責任을負擔처음

要求後二月以内에手續을取하지 않을 때는實施權者

는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를 报告로 하여自己名

號로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decision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는出頭하여手續에參加하

되며其은其使用料에對하여서는責任을負擔처음

要求後二月以内에手續을取하지 않을 때는實施權者

는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를 报告로 하여自己名

號로他에許與된特許權者 또는地域의權利者에게支

拂權適當補償金을decision하여適當하다고認定하는

特許權者王는地域의權利者는出頭하여手續에參加하

## (6) 繼·古資料시리즈

一  
二  
三

一五 一五는其以上의 특허가無효로且後同一發明、同一 또는其似한考案에對하여 第三十條의規定에 依하여正當한出願者에게特許가許與한時は原特許權者는實施權을有함

前項規定은實施權者自身이特許權者에要求하는條件에依하여其事業或은事業設備等有하며審列請求前에其實施權을登錄할 때는無효로特許가依하여實施權者는登錄할 때는無효로依하여實施權者는此를適用함.但實施權이 第三十二條第二項에依하여發生한 때는登錄을要치않음

前二項에依하여許와實施權을登錄할 때는

右實施權者는特許權者에對하여相當한補償金을支拂할을要함

第一百條

特許權者가他人의特許를發明 또는考案을實施하지 않으면其特許를發明 또는考案을實施할 때는不能한境遇에實施權이許諾이公平치못하다고認定되는境遇以外에 그自己가發明 또는考案을實施함에必要한範圍내에서前記等의實施權을有함.正當한理由로

이他特許權者가實施權을拒絶하거나其其他理由로其實施權을取得不能한 때는上記特許權者는強制實施權與之審列을請求할 수 있음.但美匠特許權者는發明特許와實施權을請求할 수 있음.但美匠特許權者는發明特許와實施權을請求할 수 있음.但美匠特許權者는發明特許와Real Right을請求할 수 있음.但美匠特許權者는發明特許와Real Right을請求할 수 있음.

但本條은植物特許에는適用하지 않음.前項規定에依

하여實施權이許與된 때에는其他特許權者로公平의理念에背반되지 않는限實施權을取得한特許權者

의特許에關하여反對實施權을有함

前項에反對實施權이正當한理由 없이拒絶되거나 그

其他理由로取得不能한 때는他特許權者는強制實

本條第二項第一句에依하지 않고許與할 수 있음

前四項의規定에依하여許와實施權者及反對實施權者는其許諾者에對하여相當한補償金을支拂할것이 어여實施權取得者는特許權者, 地域의權利者, 獨占的實施權者, 非獨占的實施權者와는無故로 되면遇타도各實施權이所屬한特許權이存續한期間에有效함

第一百一條

特許와關한權利는特許權者, 地域의權利者, 獨占의實施權者에依하여請求할 때는其有特權利를包含한 경우에만適用할을不得함

左記各條과 同樣實質上는實施權을登錄한 경우에만適用할을不得함

한것으로看함

一、國內에서實施可能한特許를發明 또는考案이其特許와後三年以内에充分한理由로는國內에서

相當한商業의規模로實施되자마자에

由以適用한程度外條件으로需要를滿足시키지 못할時

二、特許와後 three years以内에特許品, 特許植物, 特許技術或은方法에依한生產品에關하여充分한理

由以適用한程度外條件으로需要를滿足시키지 못할時

三、國內에서實施可能한特許를發明 또는考案이其

特許와후 three years以内에充分한理由로는國內에서

相當한商業의規模로實施되자마자에

由以適用한程度外條件으로需要를滿足시키지 못할時

四、實施權은適當한條件附의實施權의許諾를拒否

할이 我國의事業或은產業及國內居住者の事業에

不當한損害를加하여實施權의許諾이公益上必要

하지 않음.前項規定에依

하여實施權이許與된 때에는其他特許權者로公平의理念에背반되지 않는限實施權을取得한特許權者

의特許에關하여反對實施權을有함

外生產、使用、販賣에不當한損害를加하는專用権을

施하는데

前項各號에關하여濫用에有無를決定함에關하여

는特許는發明及考案을獎勵하여發明及考案이選出되는가

정保하기為하여許와원것으로看做하여야 함

는特許는發明及考案을獎勵하여發明及考案이選出되는가

정보하기為하여許와원것으로看做하여야 함